지식재산관리규정

시행: 2023. 10.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 구성원의 지식재산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성원의 지식재산 발명을 장려하고, 본교의 권리를 보호하며,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직원 등"(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직원, 연구원과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2.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의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노하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및 기술정보 등의 일체의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 사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 3. "직무발명"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교직원이 그 전공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모든 지식재산
- 나. 본교 또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장과 계약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창작하게 된 발명,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본교의 연구시설·설비·인원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 이루어진 발명 등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동기및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4.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뜻한다.
- 가. 제3호의 규정에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나.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다. 제7조에 정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 5. "발명자"는 발명을 한 교직원을 지칭한다.
- 6.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과 공동으로 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지칭한다.
- 7. "기술이전"이라 함은 본교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대해 통상실시, 전용실시, 권리양도, 노하우 이전 및 전수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 8. "기술이전기여자"라 함은 기술의 실시를 위한 전략 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를 지칭한다.
- 9. "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체결로 인하여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는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명칭을 불문하고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수익을 지칭한다.
- 10. "기술료 수익"이라함은 기술료에서 관련 비용, 발명자 보상금 및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을 제외한 수익을 의미한다.

제3조(사무의 관장)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함)은 경희대학교 총장을 대리하여 본 규정의 운영 및 지식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장 직무발명 등의 신고와 권리의 귀속 등

제4조(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발명을 한 경우,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2. 발명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3.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서류
- ②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발명자가 발명신고서에 각자의 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시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증(별지 제3호 서식) 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외부지원연구에 관한 신고 등) 교직원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외부지원발명 등의 권리귀속,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외부지원연구에서 나온 지식재산권은 발명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단,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2. 제1호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때, 외부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외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에서 부담하고, 외부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에서 부담하되 필요에의해 산학협력단에서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3. 외부기관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발명에 대한 출원인 지분 및 그 지분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출원에 관련한 내용을 출원 전에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 ① 본교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 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제27조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단,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발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교직원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식재산권 중 해당 교직원의 지분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단,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7조(승계시점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여부를 검토하고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발명의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권리 승계 통지는 발명자가 제출한 발명신고서가 산학협력단 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권리 승계 의사를 알린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발명신고서 승인 여부는 발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내 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한 이후에도 내부 선행기술조사 또는 심의 등을 통해 특허성이 결여된 경우 발명자와 협의하여 출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권 처분 등의 제한)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기 이전에 임의로 해당 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거나 지식재산 관련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처분할 수 없다.

제9조(지식재산권의 승계) 산학협력단이 교직원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승계할 경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교직원은 직무발명의 심사, 지식재산권의 실시,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 ③ 산학협력단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당해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출원·등록 및 유지 등

제11조(출원·등록 및 유지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본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 지체없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직무발명으로 인정된 발명
- 2.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
- ② 산학협력단은 승계받은 발명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절차를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한다. 다만, 외부기관과 공동출원, 발명자의 요청 등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한 사유로 특정 특허사무소에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전담특허사무소 이외의 특허사무소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단. 관련 계약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 또는 발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단이 단독출원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만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 11조 제2 항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한 사유로 특정 특허사무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공동 출원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 1. 제3자가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수 있는 영리 기관일 경우 제3자가 지식재산권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 2. 제3자가 독자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제3자가 출원인 지분에 따라 지식재산 비용을 부담한다.
- ⑥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지식재산권이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심사를 통해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지를 포기할 수 있다. 단, 국외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지식재산권이 등록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발명자가 권리 유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 ⑧ 지식재산권 유지의 포기 결정 건에 대해 발명자가 양수받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지분 중 90%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에 소요된 총 제반 비용의 90%를 양도비로 산정하고, 양도비와 지분 양도 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하며, 양도된 이후의 비용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양수받은 발명자가 전액 부담한다. 지식재산권을 양수받은 발명자는 공동 발명자의 명의 이전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⑨ 7항의 지식재산권을 양수받은 자가 동 지식재산권의 제3자로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요청을 받은 경우, 산학협력단과 해당 지식재산권을 양수받은 발명자는 협의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수익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⑩ 9항의 지식재산권을 양수받은 자가 동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공동 권리자인 산학협력단

으로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다.

- ⑪ 외부발명자와의 공동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비용 등에 관해서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
- ②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명의의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비용은 발명자 개인이 부담한다.

제12조(국외출원 등) ① 발명자는 국외특허 출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국외특허출원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및 기술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명자가 국외출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외부전문가(변리사) 3인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지식재산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PCT 출원 및 개별국 진입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 ③ 지식재산심의소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총점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특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부기관과의 공동출원의 경우 예외로 하며, 등급 심의 결과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있다.
- ④ 국외출원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발생시, 발명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2차 심의 후 1·2차 결과를 합산 평균하여 심의한다.
- ⑤ 산학협력단이 국외특허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외출원 개별국 진입은 1개국에 한한다. 다만, 지식재산심의소 위원회에서 기술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국 추가 지원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⑥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심의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발명자 요청에 의해 개별국을 추가 진입한 경우에는 국외특허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산학협력단이 국외특허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발명자는 개인 비용으로 국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나, 출원인 명의는 산학협력단으로 하여야 한다
- ⑧ 발명자 개인 비용으로 국외 출원한 발명이 기술이전 된 경우, 산학협력단은 기술료 중 국외출원 시 발명자 개인이 지급한 제반 비용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는 수익금은 규정 제19조 및 제20 조를 따른다.

제4장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제13조(지식재산심의위원회) ①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 캠퍼스에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 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본교 전임교원 4인을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학무부총장(국제)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대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

- 가.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에 관한 것
- 나. 직무발명 등의 권리 귀속에 관한 것
- 다. 직무발명 등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것
- 라. 직무발명 등의 출원 및 비용 등에 관한 것
- 마. 직무발명 등의 해외출원 지원에 관한 것
- 바. 공동발명자의 지분비율에 관한 것
- 사. 보상금에 관한 것
- 아. 지식재산권 실시 및 유지에 관한 것
- 2. 지식재산관리규정의 적용 및 개폐에 관한 것
- 3. 기타 지식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회의 시 발명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본교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처분한 경우
- 2. 기타 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한 자

제17조(지식재산심의소위원회 운영 및 기능)

- ① 지식재산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 내부 구성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② 소위원회는 필요 시 발명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심의 사안 별로 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규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등록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여부에 관한 것
- 2. 규정 제12조에 따른 국외출원 비용지원 여부에 관한 것
- 3. 직무발명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에 관한 것
- 4.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관리 및 세부 운영사항에 관한 것
- 5. 기술박람회 및 마케팅 출품 대상 선정에 관한 것
- 6.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가치 산정, 기술이전 조건 검토에 관한 것
-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세부 운영사항에 관한 것
- ⑤ 소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본교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발명보상

제18조(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 ① 산학협력단은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실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1. 기술이전 방식 : 실시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 권리양도(전부 또는 일부)
- 2. 기술료 :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제3자 라이센싱 아웃 등
- 3.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등
- 4.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계약의 세부내용
- 5. 기술료 징수형태 : 현금 또는 주식
-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발명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 ③ 기술료의 산정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관련 투입된 제반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료 정부반납 등 타지분을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기술료에서 관련비용(대상기술의 출원, 등록, 유지,취득 및 처분 등에 소요된 산학협력단 총 지원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며, 상기 수익금은 지식재산권 별로 산정한다.

- 1. 수익금(기술료-관련비용)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익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 2. 수익금(기술료-관련비용)이 1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 3. 노하우 또는 아이디어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 ② 환자진료, 임상실험 등을 위한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이전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익금 중 발명자 보상 금의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③ 국제표준특허 로열티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 비율의 경우, 장기적 로열티 수입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익금 중 발명자 보상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상향조정 비율은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④ 기술료 수입을 배분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선급기술료에서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발명자와 협의하여 지급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학과나 연구소 등의 교내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 ⑥ 외부지원연구로 생성된 지식재산의 기술료 수입의 경우 보상금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 ⑦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 ⑧ 발명자가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통하여 조정된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 시에는 발명자 보상금 지분 육 변경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⑨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⑩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기여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본교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국제표준특허의 경우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과 제3항의 발명자 보상금 추가 상향 비율의 합이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급한다.
- ⑪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지급은 기술이전 보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⑩ 발명자 보상을 통해 성과배분을 받은 자 및 타기관에 속한 자는 기술이전기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타기관에 속한 자는 별도로 체결된 중개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한다.
- ③ 제18조 1항 5호에 따라, 기술료가 주식인 경우, 제1항 각호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의 적립 및 관리) 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등에 의해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는 수익은 별도 계정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는 수익은 산학협력단으로 최종 귀속되는 기술료 수익을 의미한다
- ③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는 수익은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본조 제3항에 따른 기술재투자비의 용도와 금액은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협력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 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보상금)은 시행일 이후 입금된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